|  |
| --- |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

**2022. 3. 28.**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 42개 단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I. 제정안의 배경과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경찰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을 총망라한 독자적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는 국민의 권리 ·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하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여 본래적 수사의 주체로 발돋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19조)

바. 지침으로 시행하던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 및 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2조, 제36조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

사.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22조)

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비문해자 및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안 제35조, 제38조)

차. ‘21년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 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50조, 제52조, 제53조)

**II. 각 조문별 의견**

**가. 차별금지사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  |
| --- |
|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장애인, 19세 미만의 사람, 여성, 노인, 외국인 등 신체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별히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한다. |

* 과거 경찰청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는 차별금지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2018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됨. 따라서 이번 제정안에서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1항과 관련하여, 현재 19가지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회에 발의된 평등법/차별금지법에서 열거된 차별금지사유를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유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 **성별정체성** :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지닌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관련된 사유로서, 현재 발의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외국의 차별금지법제에서도 성적지향과는 독자적인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고용형태** : 현재 직업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직업 외에도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가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따라서 현재 제정안의 직업을 ‘직업 및 고용형태’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임신 또는 출산** : 임신 또는 출산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음

4) **출신국가 및 출신민족** : 현재 국적과 인종이 차별금지사유로 예시되어 있는데, 출신국가와 출신민족의 경우 이와는 다소 다른 의미로서 이주민, 난민이 겪는 차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함.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역시 이런 이유에서 국적, 인종, 출신국, 출신민족을 모두 예시적 차별금지사유로 들고 있음

5) **건강상태** : 병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는데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외에 다양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도 존재함으로 ‘병력 또는 건강상태’로 함이 더 바람직함

* **제2항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는 제2조 4호에 “성(性)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었으나 2018년 개정되면서 해당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경찰이나 검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고,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5.9%가 ‘경찰 및 검사에게 트랜스젠더 정체성 관련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제정안에 성소수자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신체 수색·검증 관련**

|  |
| --- |
| 제25조(신체의 수색·검증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사람의 신체를 수색ㆍ검증하는 경우에는 불쾌감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②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ㆍ검증할 때에는 같은 성별의 경찰관이 해야 한다. 다만, 같은 성별의 경찰관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성별의 성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

* 신체 수색·검증 시 대상자가 트랜스젠더인 경우 법적 성별과 성별정체성이 다르기에 같은 (법적) 성별의 경찰관이 수색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보호규칙은 제6조 제4항에서 외국인보호소 입소 등에서 실시하는 신체와 소지품 검사에 있어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보호외국인이 성적 소수자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소장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대상자가 성소수자인 경우에는 서장이 지명하는 다른 성별의 경찰관이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제2항 단서는 같은 성별의 경찰관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성별의 성인’을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서 같은 성별의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가 불분명함.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단지 성별이 같다는 것만으로 신체 수색·검증에 참여시키는 것은 대상자에게 또 다른 수치심, 모욕감 등을 불러올 수 있음. **따라서 해당 단서를 삭제하거나 적어도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는 “신체 등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다. 수사 서류 열람·복사 관련**

* 경찰청은 2019년 11월부터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실시하였음. 여기에는 △ 경찰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 제공, △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통지확대, △ 상호간 소통체계 구축 △ 조사환경 개선 관련, △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이 중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통지확대와 전자기기 사용에 관해서는 제정안 제32조와 제34조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경찰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 제공에 관해서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 방안에 따르면 “‘조사당일 작성된 본인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포함)는 공개여부 판단에 쟁점이 없거나, 제공할 분량이 많지 않은 등 조사당일 조치가 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검토 후 제공하고, ‘그 외 서류’는 청구기한(10일) 내 신속히 검토 후 결정”한다고 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을 제정안에도 조문으로 명문화하여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위와 같은 지침들이 있어도 현장에서 피의자가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피의자 조사 시에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것을 제36조(피의자의 조사 시 유의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라. 진술 영상녹화 관련**

|  |
| --- |
| 제38조(영상녹화의 대상)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고,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한다.  1. 구속된 피의자 및 영상녹화를 희망하는 피의자  2.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3.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녹화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도 체포⸱구속 등 수사등 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 및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

*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구속된 피의자’ 및 ‘영상녹화를 희망하는 피의자’는 영상녹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속된 피의자나 영상녹화를 희망하는 피의자가 추후 기소되어 영상녹화 된 진술이 공판정에서 현출되었을 때 판사의 심증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오히려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에도, 위 규정으로 인하여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영상녹화의 유불리를 엄밀히 따지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 및 ‘영상녹화를 희망하는 피의자’에 대해 무조건 영상녹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경이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뒤, 피의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할 경우에만 영상녹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장애인, 외국인 등의 경우에도 영상녹화가 특별히 더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장치라고는 볼 수 없음.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와 같은 지원제도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따라서 이 경우에도 영상 녹화는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피해자 의사소통 조력 관련**

|  |
| --- |
| 제44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 제공) ③ 경찰관은 외국인이나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역인 등을 활용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제44조는 외국인이나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해 제48조 ① 경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거나 체포·구속하는 경우 언어,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고,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제49조 ②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해야 한다와 같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의사소통 지원을 의무로 두고 있음
*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여부와 무관함에도 이처럼 조문상 그 의무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적이라 할 것임. **따라서 제44조의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여 피해자 지원을 의무로 할 필요가 있음**

**바.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 제정안 제7절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 외에 다음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

1. **노인**

* 노인은 제정안 제7조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노인에 대한 보호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노인복지법」의 다음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음

|  |
|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1. **장애인**

|  |
| --- |
| 제49조(장애인에 대한 수사 시 유의사항) ②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해야 한다. |

* 제49조 제2항은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화는 의사표현의 방법이고 정식명칭은 수화언어를 줄인 ‘수어’임. 「한국수화언어법」 역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어·문자통역’으로 문구를 수정하여야 함

1. **성소수자**

*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소수자는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 차별,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음. 이러한 차별, 인권침해에는 △ 조사과정에서 성정체성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 성정체성과 관련한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성소수자인것만을 이유로 범죄좌로 취급하는 것, △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호칭으로 지칭하는 것 등이 있음. 따라서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다음 조항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성소수자 보호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 --- |
|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성적 소수자 수사)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사. 수사인권교육 관련**

|  |
| --- |
| 제52조(수사인권교육) ① 경찰청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은 매 2년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 제52조는 수사업무 종사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교육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2021. 10. 7.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 관련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음.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방법, 실시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의 경 우,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인권보호규칙 제20조를 개정하여 인권교육의 시간, 대상, 단계, 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 지방경찰청마다 최소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직급별, 기능별 등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2022. 2. 9. 경찰관 인권교육 의무화·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인권교육 의무화 및 교육 대상·시간 구체화, 경찰 인권교육협의회 신설’ 등 내용을 담아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음. 그렇다면 이러한 경찰 인권 보호 규칙 개정에 발맞추어 이번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서도 수사업무 종사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끝)